

2026 해외 관세동향

Overseas Customs Trends



CONTENTS



01. 미국

- 미국 세관의 집행 강화 행정명령 및 팩트시트 발표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철강 및 구리에 대한 세관 지침 개정
-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시스템(CAPE) 가동 현황(6.9. 기준)
- CBP 강제노동 물품 통관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02. 중국

- 2026년 5월 중국 수출입 실적
- 2025년 법정검사 외 수출입상품 품질안전 표본검사 결과 발표(6.2.)
- 2026년 5월 중국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현황



03. 일본

- 국제우편 '인쇄물' 발송 기준 관련 변경 동향
- EPA 관세 인정 어드바이저 제도 운영 현황
- 세관 중장기 구상 2030 발표(6.23.)



04. EU

- 유럽연합의 새로운 철강 조치 동향

01. 미국

출처 :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미국 세관의 집행 강화 행정명령 및 팩트시트 발표

■ 배경 및 목적

- '26.6.3.(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보호, 합법 무역 촉진, 관세의 적시 징수, 미국인과 국내 경제 보호에 초점을 맞춰 세관 단속 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관련 행정 명령과 팩트시트를 발표
- 세관의 단속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필수적으로, 효과적인 세관의 단속집행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물품의 수입을 막고,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 IOR)가 정확히 식별되어 납부해야 할 관세에 책임을 지도록 하며, 강제 노동, 원산지, 지식재산권, 제품 안전에 관한 연방법 준수를 보장하는 수단
- 그동안 고질적인 비효율성, 허점, 구식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수입품의 가치를 저평가하거나 정보를 은폐하여 관세를 회피해 온 이용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포괄적인 개혁을 단행

■ 주요 내용

01. 수입업자에 대한 요건 강화

- ① **(보증 요건 상향)** 수입업자는 상시 일정 수준 이상의 국내 자산이나 보증(Bond), 또는 둘 다 유지
- ② **(외국 수입업자 요건 강화)** 미국 외부에 기반을 둔 외국 수입업자에게 더 엄격한 정식 통관(Formal Entry) 요건을 적용하며, 수출입안전관리 프로그램(CTPAT) 인증 또는 정식면허를 소지한 관세사를 통해서만 통관 신청 가능
- ③ **(간이 통관 제한)** 오직 미국 국내에 있는 수입업자만 간이 통관(Informal Entry)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④ **(우수 등급(Good Standing)*요건 도입)** CBP는 명령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수등급(Good Standing)'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안보부 장관은 모든 수입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함. 펜타닐 등 금지 물품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 수입업자는 우수등급을 인정받을 수 없음. 우수등급이 없는 수입업자는 미국으로의 수입 및 수입과 직접 관련된 활동이 불허

*CBP는 관세·무역법령 준수 여부와 관세 납부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수등급을 부여할 예정.

- ⑤ **(심사 절차 강화)** 상품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원·적격성 심사를 강화

- ⑥ **(정보 제출 의무화)** 관세 회피와 공급망 규칙 위반을 막기 위해 공급망 정보 제출 및 인증 요건을 마련할 것이며, 외국 수출업자가 수출 시 제출한 수출신고 서류를 미국 CBP에도 동일하게 제출토록 의무화
- ⑦ **(최소 벌금 하한선(50%) 설정)** 기존 관세법 집행을 강화하며, 법을 위반한 수입업자에게 CBP가 재량으로 벌금을 깎아주지 못하도록 최소 50%의 페널티 하한선을 설정
- ⑧ **(압류 및 처분 강화)** 불법 수입품의 압류와 처분을 강화하고, 소유권의 자진 포기에 따른 규제 부담을 줄이며 제3자 처분을 허용

02. 소액 면세 영구 폐지

-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소액 면세 제도의 법적 근거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했으며, 이는 '27.7.1.부터 효력이 발생

03. 시행시기

- 국토안보부(DHS)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나, 대통령은 90-180일 이내에 정책과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

04. 최우선 단속 과제

- 국토안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강제노동 생산품 유입, 저가신고, 허위신고, 제3국 우회수입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여 조사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철강 및 구리에 대한 세관 지침 개정

■ 개요

- '26.6.5.(금)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자, 관세사 및 신고인이 품목분류표(HTSUS) 9903.82.01부터 9903.82.26에 규정된 모든 국가의 특정 철강, 알루미늄, 구리 제품 및 그 파생 상품에 대해 수입 신고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공개

■ 발효 시기

- 이번 지침은 '26.6.8. 오전 12시 1분(미 동부 표준시) 이후 수입 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부터 전면 적용

■ 주요 내용

① 관세 대상 신규 편입 품목

- 아래 품목은 기존에 면세 혹은 일반 품목군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제232조 추가 관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
 - 3701.30.00 사진용 판 및 플랫필름 (구리/알루미늄 기반 파생 상품구조)
 - 9403.20.0075 기타 금속제 가구 (카운터, 데스크 등 특정 사무 기기류)
 - 9403.20.0082 기타 금속제 가구 (가정 및 공업용 가구 구조 부품 포함)
 - 9403.99.9040 금속 가구의 기타 부분품 및 파생 부속 장치

② 관세율 인하 및 감면 품목

- 주로 미국 내 인프라 확충, 농업 지원 및 이동식 건설·산업용 중장비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63개 분류 품목에 대해 관세율 인하 조치를 단행
 - 산업/물류 중장비: 지게차 및 작업용 트럭 제품군 (8427.10.40, 8427.10.80, 8427.20.40, 8427.20.80, 8427.90.00)
 - 건설 및 토목 기계: 불도저, 그레이더, 기계식 굴삭기 및 관련 철강 파생 부분품 (8429.11.00, 8429.19.00, 8429.20.00, 8429.30.00, 8429.40.00, 8429.51.10, 8429.52.10, 8431.42.00 등)
 - 농업용 대형 장비: 농경용 플라우, 예취기, 수확기 및 트랙터 제품군 (8432.10.00, 8432.90.00, 8433.20.00, 8433.51.00, 8701.10.01, 8701.91.50 등)
 -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품류: 차량용 기어박스, 소음기, 배기장치, 클러치 및 주변 브래킷 금속 부품 (8708.40.30, 8708.92.10, 8708.93.15, 8708.29.2120 등)

③ 미국산 원자재 요건(American Content Threshold) 완화

- 기존 규정에서는 수입 제품이 추가 관세 면제나 감면을 받기 위해 완전한(entirely) 미국산 알루미늄, 철강 또는 구리로 제조되었음을 인정받으려면 미국산 금속 비중이 최소 95%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기준이 85%로 완화

④ 신고 실무 지침

01. 금속 중량 15% 미만 품목 (9903.82.03) 신고 요령

- 제품 내 금속 성분이 15% 미만임을 입증하여 0%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속들의 합산 순중량(kg단위)을 반드시 수입신고서 요약 라인(Entry Summary Line)의 두 번째 수량 (Second Quantity) 항목에 기재해야 함

02. USMCA (캐나다/멕시코) 파생 철강 제품 분할 신고법 (Two-Line Rule)

- USMCA에 따라 특별 관세율을 적용받는 파생 철강 제품(9903.82.20 및 9903.82.21)은 자재 내역에 따라 반드시 두 개의 라인으로 분할 제출해야 함
 - **제 1 라인** : [비미국산 원자재 분 (9903.82.20)] 총 수입 수량을 보고하고, 가치 항목에는 전체 가치에서 미국산 부품액을 차감한 값을 기재함.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특별 프로그램 지표 (SPI) 코드는 'S'를 입력
 - **제 2 라인** : [미국산 원자재 분 (9903.82.21)] 수량 항목에는 반드시 "0"을 보고해야 하며, 가치 항목에는 전체 물품 가치의 최대 40%까지만 미국산 부품 금액으로 인정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0% 관세가 적용됨. SPI 코드는 동일하게 'S'를 입력

03. 원산지 추적 기록(Traceability) 보고 의무

- **(철강 및 철강 파생 제품)** 수입 시 용해 및 주조 국가(Country of Melt and Pour)를 필수 입력
- **(알루미늄 제품군)** 제련 및 주조 국가(Country of Smelt and Cast) 정보를 누락 없이 보고
- **(구리 제품군 일부 (8544.42.10, 8544.42.20 등))** CBP ACE 시스템 내 구리 제련국 입력 기능을 활성화하는 대로 의무화가 개시될 예정이므로 후속 공지 대기 필요

⑤ 러시아산 알루미늄 및 파생 상품에 대한 초고율 제재 유지

- 러시아산 1차 알루미늄이 제련/주조된 제품은 관세 인하 또는 면제 조치에서 전면 배제되며, 이들 품목은 기존대로 HTSUS 9903.85.67 및 9903.85.68에 의거하여 200%의 초고율 증가세가 엄격하게 누적 적용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시스템(CAPE) 가동 현황(6.9. 기준)

- **(전체 규모 및 접수 현황)** 대법원 판결에 따른 총 환급 대상은 약 5,300만 건, 1,660억 달러 규모이며, 현재 CBP가 구축한 CAPE 포털을 통해 1,700만 건, 약 950억 달러 상당이 접수되어 처리 중
- **(지급 성과)** CBP는 이미 230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을 미 재무부로 송금 완료했으며, '26.6.말까지 추가로 400억 달러를 송금하여 총 환급 집행액이 600억 달러를 넘어설 예정
- **단계별(Phase) 배포 계획**
 - ▶ **1단계 (Phase 1)**
미정산 항목 중심으로 가동 중이며, 대상 금액(1,09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처리 완료
 - ▶ **2단계 (Phase 2)**
조정(Reconciliation)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약 287억 달러 규모)을 대상으로 하며, '26.6. 29. 정식 배포될 예정
 - ▶ **3단계 (Phase 3)**
정산이 최종 확정된 항목(Finally Liquidated Entries, 약 114억 달러 규모) 처리를 위해 기술적 검토 중이며, 6.29. 2단계 배포 직후 준비에 착수하여 7월말 경 환급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자의 환급 건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
- **(소규모 수입업자 보호)** CBP 내부 분석에 따르면 미 전체 수입업자(IOR)의 86% ~ 96%가 중소·영세 업체에 해당하며 현재 CAPE 시스템 이용자의 40% 이상이 연간 거래 20건 미만의 영세업자임. CBP는 복잡한 서류 대신 통관 번호(Entry Number)만으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행정 부담을 최소화 했다고 강조



CBP 강제노동 물품 통관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 개요

- '26.6.12.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공급망에서 불법 노동 행위 근절하기 위해 '강제노동 물품 통관 절차 통합 가이드라인'을 기존 2022년 버전에서 개정하여 배포

■ 주요 내용

① 법적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 및 통합

- 이전 가이드라인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집행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26년에는 미국 강제노동 금지 관련 3대 법적 권한을 단 하나의 문서로 통합

*관세법 제307조 (19 U.S.C. § 1307 - 통관보류명령(WRO) 및 인도보류결정(Finding)),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UFLPA), 적대국 대응 처벌법 (CAATSA - 북한 국적자/시민에 의한 강제노동 규제)

② ‘집행 프로세스 맵(Enforcement Process Maps)’ 도입 및 명확화

- **(전체 절차 시각화)** UFLPA(잠재적 유입/직접 유입), CAATSA, WRO, Finding 조치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과정 플로우차트가 신설되어 수입업자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통관 서류 및 배제 시 대응 가이드 구체화)** 화물이 억류(Detention)되거나 수입 배제(Exclusion) 처분을 받았을 때 수입업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재수출, 폐기, 이의제기/프로테스트 등)와 타임라인이 상세히 안내

③ 집행 방식의 세분화 (UFLPA* 잠재적 유입 vs 직접 유입)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 **(잠재적 유입 (Potential Input))** 신장 지역이나 UFLPA 엔티티 리스트와의 연관성 정보가 있을 때 적용되며, CBP는 화물을 억류(Detain)하고 30일의 소명 기간을 부여(수입업자는 최대 90일 까지 연장 요청 가능)
- **(직접 유입 (Direct Input))** 신장 지역이나 엔티티 리스트에서 생산되었다는 명확한 정보가 있는 경우로, 억류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수입 배제(Exclusion) 조치. 수입업자는 180일 이내에 행정 이의제기(Protest)를 통해서만 소명 가능

④ CAATSA*(북한 강제노동) 집행 절차 공식 명시 ('24년 발효 반영)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 북한 국적자나 시민이 일부라도 채굴·생산·제조 과정에 참여한 물품은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하여 수입을 배제(Exclusion)
- 이 처분을 받은 수입업자는 180일 이내에 이의(Protest)를 제기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출하여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등 UFLPA의 예외 검토(Exception Review)와 유사한 증빙 절차가 적용

⑤ 고위험 및 우선 단속 부문(Priority Sectors) 가이드라인 대폭 추가

- 부록(Appendix A)을 통해 UFLPA 전략에서 지정한 고위험 단속 품목별*로 공급망 추적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제시

*알루미늄, 의류, 소다, 구리, 면화, 리튬, PVC, 대추야자, 수산물, 실리콘(폴리실리콘 포함), 철강, 토마토 등

⑥ 실질 실사(Due Diligence) 및 소명 도구 안내

- 가상의 의류 수입업자 예시(Appendix B)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어떻게 시작하고, 면화 재배부터 방적, 직조, 염색, 완제품 배송까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시각적 자료와 함께 단계별로 설명
 - 원산지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동위원소 테스트(Isotopic Testing)*를 공급망 검증 기법으로 소개하고, 수입업자가 공급망 조사 및 사기 리스크 감소를 위해 활용하도록 장려(Appendix D)
-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사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 실사 초기 단계부터 조기 활용할 것을 권고

⑦ 공식 서식 샘플 제공 (Appendices G~M)

- 수입업자가 CBP로부터 받게 될 통지서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서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샘플*을 대거 첨부

*UFLPA/WRO 억류 통지서 (Detention Notice), UFLPA/CAATSA/WRO 수입 배제 통지서 (Exclusion Notice), 반송 지시서 (Notice of Redelivery), 원산지 증명서 서식(Certificate of Origin - WRO 소명용 특수 양식)

■ 제도별 세부 집행 절차

01. UFLPA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절차

① **잠재적 유입 프로세스 (Potential Input Process)** :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또는 UFLPA 리스트, NTT 리스트 업체의 원자재·부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CBP의 식별 및 단속** : CBP가 위험 평가를 통해 잠재적 유입 화물을 식별

2. **화물 억류 및 통지** : CBP가 화물 통관을 중단하고 수입업자에게 억류 통지서(Detention Notice)를 발송

3. **수입업자의 대응(30일 이내)** : 수입업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최대 90일 까지 연장 신청 가능)

1) 재수출 또는 폐기 :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

2) 적용 배제 검토(Applicability Review) 요청 : 해당 화물이 신장 지역이나 NTT 리스트와 전혀 무관함을 공급망 추적 서류로 증명

3) 예외 검토(Exception Review) 요청 : 신장 지역이나 엔티티 리스트 관련성이 맞지만,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

4. **CBP의 최종 결정** :

1) 승인 시 : 화물 통관(예외 검토 승인 시 30일 이내에 미 의회에 보고)

2) 기각 또는 무대응 시 : 30일 동안 아무 조치도 없거나 소명이 기각되면 수입 배제 통지서(Exclusion Notice)가 발행되며 화물은 수입 배제. 이 경우 수입업자는 180일 이내에 재수출/폐기하거나, 이의제기(Protest) 가능

② **직접 유입 프로세스 (Direct Input Process)** : 신장 지역 또는 UFLPA 리스트 업체에서 직접 생산 되었다는 정보가 있는 경우

1. **CBP 식별** : 직접 유입 화물로 식별되면 즉시 단속 착수

2. **즉시 수입 배제 및 통지** : 억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통관을 중단하며 수입 배제 통지서(Exclusion Notice)를 발행

3. **수입업자의 대응 (180일 이내)** :

1) 화물을 재수출 또는 폐기

2) 배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행정 이의제기(Protest)를 제기하여 적용 배제 또는 예외 검토를 요청

4. **이의제기(Protest) 결과** :

1) 승인 시 : 화물 통관(예외 검토 승인 시 미 의회 보고)

2) 기각 시 : 화물은 배제 상태로 유지되며, 수입업자는 기각 후 180일 이내에 재수출/폐기하거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민사 소송 제기 가능

02. CAATSA (북한 강제노동 규제) 집행 절차

● 전 세계 어디서든 북한 국적자 또는 시민이 일부라도 채굴, 생산, 제조한 화물에 적용되는 절차

1. **CBP의 식별 및 단속** : 북한 노동력이 관여된 잠재적 유입 화물을 식별

2. **수입 배제 및 통지** : CBP는 화물 통관을 중단하고 즉시 수입 배제 통지서(Exclusion Notice)를 발행

3.수입업자의 대응 (180일 이내):

1) 화물을 재수출 또는 폐기

2) 180일 이내에 행정 이의제기(Protest)*를 제기하여 예외 검토를 요청

*북한 노동력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관여했더라도 강제 노동 하에 생산된 것이 아님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소명해야 함

4. 이의제기(Protest) 결과:

1) 승인 시: 화물 통관

2) 기각 시: 화물은 배제 상태로 남으며, 수입업자는 180일 이내에 재수출/폐기하거나 미국 국제 무역법원(CIT)에 민사 소송 제기 가능

03. WRO 및 Finding (관세법 제307조) 집행 절차

- CBP가 특정 외국 공급업체나 물품에 대해 강제 노동 혐의를 조사한 후 취하는 조치이며, 증거의 수준 (합리적 의심 vs 상당한 근거)에 따라 절차가 다름

① WRO (통관보류명령 - 합리적 의심 수준)

1. WRO 발행 및 억류: 강제 노동 사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는 경우 WRO를 발행하고 해당 화물을 억류(Detain)

2. 억류 통지: 수입업자에게 억류 통지서(CBP Form 6051D)를 발송

3. 수입업자의 대응 (3개월 이내): 수입업자는 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함(연장 불가)

1) 화물을 미국 영토 밖으로 재수출하거나 폐기

2) 허용성 검토(Admissibility Review) 요청: 외국 판매자가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및 강제 노동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실사/공급망 추적 서류를 제출

4. CBP의 최종 결정:

1) 증거 충분 시: 화물 통관

2) 증거 부족 또는 무대응 시: 3개월 이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WRO 배제 통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을 거부. 수입업자는 배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수출/폐기하거나 이의제기(Protest)를 해야함

② Finding (인도보류결정 - 상당한 근거 수준)

1. Finding 공표 및 압류: 강제 노동 사용에 대한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확보되면 국토안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Finding을 공표하고, 화물을 즉시 압류(Seize)하며, Finding 화물은 수입업자가 임의로 재수출할 수 없음

2. 압류 통지: 압류 및 몰수 조치관(FPFO)이 수입업자에게 압류 통지서 송부

3. 몰수 절차 개시: CBP가 행정 몰수(Forfeiture) 및 폐기 절차 시작

4. 수입업자의 대응 (30일 이내): 수입업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구제 청원서(Petition for Relief)를 제출하여 해당 화물이 강제 노동과 무관함을 증명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 소명에 실패하면 화물은 최종 몰수되어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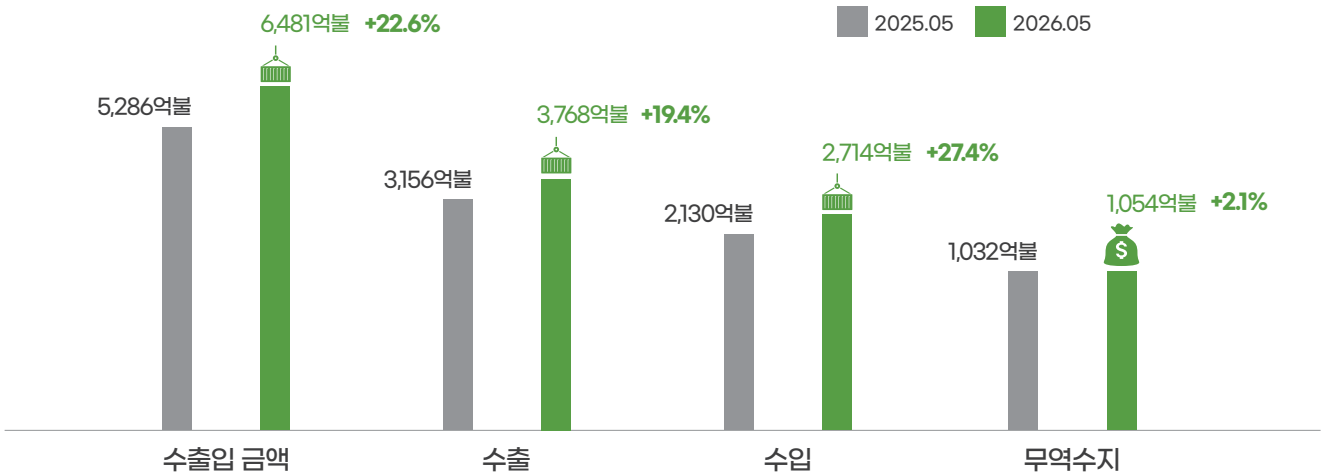
02. 중국

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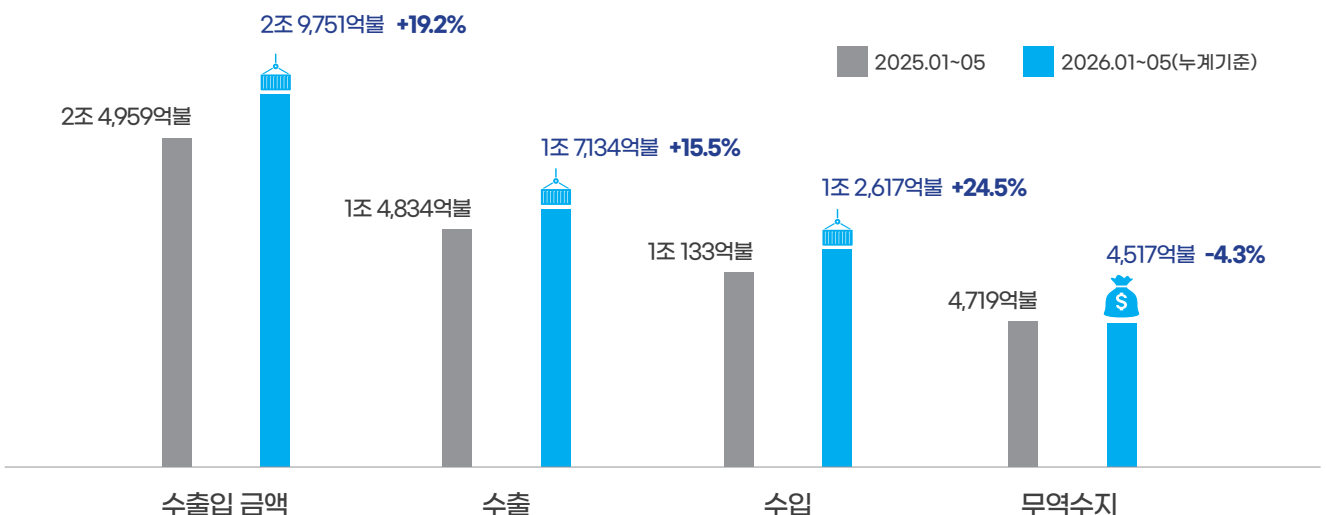
2026년 5월 중국 수출입 실적

■ 총괄

- '26.5. 수출입 금액은 6,481억불(전년동기대비 +22.6%), 수출은 3,768억불(전년동기대비 +19.4%), 수입은 2,714억불(전년동기대비 +27.4%), 무역수지는 1,054억불 흑자를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1,032억불)



- '26.1. ~ '26.5.까지 누계기준 수출입금액은 2조 9,751억불(전년동기대비 +19.2%), 수출은 1조 7,134억불(전년동기대비 +15.5%), 수입은 1조 2,617억불(전년동기대비 +24.5%), 무역수지는 4,517억불 흑자를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4,719억불)



※ '25. 기준 수출입금액은 6조 3,548억불(전년동기대비 +3.2%), 수출은 3조 7,719억불(전년동기대비 +5.5%), 수입은 2조 5,829억불(전년동기대비 0.0%)로 무역수지는 11,890억불 흑자를 기록

■ 품목

- **(수출)** 수출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희토류 0.6억불(전년동기대비 +237.4%), 집적회로 355억불(전년동기대비 +110.9%), 자동자료처리설비 및 그 부분품 269억불(전년동기대비 +66.1%), 휴대폰 99억불(전년동기대비 +44.3%)
 -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도자제품 10억불(전년동기대비 -53.2%), 식량 1.5억불(전년동기대비 -25.5%), 램프, 조명장치 및 부분품 30억불(전년동기대비 -11.8%), 신발 장화 34억불(전년동기대비 -10.4%), 장난감 28억불(전년동기대비 -7%),
- **(수입)** 수입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적재중량 2톤 초과 항공기 12억불(전년동기대비 +443.1%), 자동 데이터 처리장치 및 그 부분품 170억불(전년동기대비 +80.1%), 비료 6억불(전년동기대비 +74.9%), 집적회로 566억불(전년동기대비 +68%)
 - 수입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희토류 1.2억불(전년동기대비 -46.2%), 유류 완제품 13억불(전년동기대비 -28.3%), 자동차(새시 포함) 18억불(전년동기대비 -25%), 기초 플라스틱 26억불(전년동기대비 -22.2%), 공작기계 4억불(전년동기대비 -16.5%)

■ 對한국 수출입 실적

- '26.5. 수출입 금액은 447억불(전년동기대비 +45.4%), 수출은 180억불(전년동기대비 +24.4%), 수입은 267억불(전년동기대비 +62.6%)로 무역수지는 -87억불 적자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28억불)
 - '26.1. ~ '26.5. 수출입 금액은 1,861억불(전년동기대비 +43.8%), 수출은 753억불(전년동기대비 +28.5%), 수입은 1,109억불(전년동기대비 +56.5%)로 무역수지는 -356억불 적자 기록(전년동기 무역수지 -121억불)
- ※ '25년 기준 한국과의 수출입 금액은 3,312억불(전년동기대비 +1.2%), 수출은 1,442억불(전년동기대비 -1.1%), 수입은 1,870억불(전년동기대비 +3.1%)로 무역수지는 -428억불 적자 기록



2025년 법정검사 외 수출입상품 품질안전 표본검사 결과 발표(6.2.)

※ 해관총서는 매년 6월 전년도 표본검사 결과를 공표 ('24년 결과 : '25.6.17. 발표)

- **법정검사** : 수출입상품검험법에 따라 검사가 원칙(식품, 농수산물, 화장품, 의약, 의료기기 등)
- **표본검사** : 법정 검사대상이 아닌 일부 수출입상품에 대해 추출 검사
 - (수입) 영유아 아동용품, 일상용 악세사리, 전자제품, 저전압 전기기기
 - (수출) 영유아 아동용품, 저전압 전기기기

■ 주요 내용

- 해관당국은 '25년 총 755건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3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체 부적합률은 17.75%

*('24년) 총 782건 검사 / 77건 부적합 판정 / 전체 부적합률 9.8%

- **(중금속 함유 초과)** 일본 및 한국산 모조 장신구(브로치, 귀걸이 등)의 중금속 초과 문제가 심각(불합격률 17.19%)하였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니켈 검출량 초과, 납·카드뮴 등 유해 원소 총량 초과 등이며,
 - 일부 수입 모조 장신구의 유해 원소 함량은 심각하게 기준을 초과하여 납 함량이 최고 기준치에 83배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으며, 부적합 모조 장신구는 대부분 무명 브랜드(无品牌)
 - **(주요 제품)** 인도, 페루, 방글라데시산 영유 및 아동복의 불합격 상품 비중이 높아 불합격률은 16.15%이며, 주요 사유는 품질 불량, 라벨 표기 오류, 포름알데이드 검출 등임
 - 대만,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된 전원 어댑터의 불합격률도 42.86%로 높았으며, 주요 사유로는 절연 재료 요건 부적합, 플러그 및 소켓 불합격 등임
 - 일본,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무전기의 불합격률은 39.39%, 주요 사유는 플러그 및 콘센트 불량, 내부 절연재 과열 및 화상 위험이 있는 부적절한 설계 등임
- ※ 불합격 제품은 기술적 개선 조치 후 재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수출입·판매 가능하며, 불합격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



2026년 5월 중국내 수입식품 통관 불허 현황

- '26.5.중 중국내 통관이 불허된 수입 식품류는 총 706건이며, 국가별로는 에콰도르 208건, 사우디 아라비아 43건, 호주 42건, 미국 34건, 러시아 28건 등이며, 한국은 3건임
 - 사유별로는 식품안전 국가기준 부적합 328건, 라벨 부적합 129건, 화물증명서 불일치 60건, 동물 전염병 검출 47건, 해외 식품생산업체 등록 관련 38건 등임

한국산 수입식품 통관불허 상세내역(3건)

연번	회사명	상품명	중량(Kg)	통관불허사유	반입지 해관
1	○○○○	천일염	600	식품안전 국가기준 부적합	대련
2	○○○○	천일염	750	식품안전 국가기준 부적합	대련
3	○○○○	레몬맛 음료	48	식품안전 국가기준 부적합	텐진

※ 중국 해관당국에서 통관불허되는 건수는 2월 이후 450여건 전후에서 5월 들어 706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우리 기업의 월별 통관불허건수는 감소

*(1월) 14/629건 → (2월) 10/452건 → (3월) 11/445건 → (4월) 6/463건 → (5월) 3/706건

03. 일본

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국제우편 '인쇄물' 발송 기준 관련 변경 동향

■ 배경

- 최근 상품 가치가 있는 서적이거나 게임 카드 등을 '인쇄물'로 접수하여 발송하는 경우, 도착 국가 세관에서 이를 인쇄물이 아닌 '물품'으로 판정하여 현지에서 반송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 우편물 통관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관련 절차 등을 변경

■ 주요내용

- '26.6.1.부터 상품 가치가 있는 서적이거나 게임 카드처럼 내용물이 상품 및 판매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쇄물' 항목으로 발송할 수 없음. 이러한 물품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 국제 에어패킷, 소형 포장물, EMS 등 물품 발송이 가능한 서비스로 접수하여야 함
- 상업적인 상품이나 판매품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서류 등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인쇄물'로 발송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우편물을 접수할 때 내용물의 종류 분류에서 '인터넷 판매품(통판)'이나 '상업물품(B to B)' 항목이 아닌 다른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함

*'26.6.1.부터 시행되는 국제우편 세관고지서(CN22/23)의 양식 개정에 따라 우편 유형에서 '상품건본', '판매품' 항목이 사라지고 '인터넷 판매품(통판)', '상업물품(B to B)' 항목이 신설됨

EPA* 관세 인정 어드바이저 제도 운영 현황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경제동반자 협정

- 일본 통관업 연합회는 통관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EPA 특혜관세 적용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25.6. 「EPA 관세 인정 어드바이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재무성이 후원하는 「EPA 관세 인정 어드바이저 양성 강좌」를 통해 현재까지 총 59개 통관업체에서 92명이 제1기 EPA 관세 인정 어드바이저로 선발되어 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 '26.7.에는 제2기 어드바이저 선발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이 운영될 예정임. 교육 과정은 품목분류, 원산지규칙, EPA 특혜관세 활용 등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강좌를 모두 수강한 대상자는 최종 시험을 거쳐 인정 어드바이저로 선발
- 최종 선발 후에는 연합회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되며, 관련 제도 및 지식 등 업데이트를 위한 정기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협조 의무가 주어짐. 인정 어드바이저는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단을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



세관 중장기 구상 2030 발표(6.23.)

I. 개요

- **(배경)** 방일 외국인 관광객 급증,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소액 수입화물 증가, 경제안전 보장의 중요성 확대 등 세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관세국은 노동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입 화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세관을 차세대형 조직으로 혁신
- **(대응)** 관세국은 차세대형 세관을 구상하고자 지난 2020년 발표한 「스마트 세관 구상 2020」에 이어 제2차 중장기 비전인 「세관 중장기 구상 2030」을 수립. 본 구상에 따라 관세국과 세관은 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면서, 관련 단속 방식과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
- **(분야별 전략)** 국경관리 강화, 파트너십 확대, 디지털 전환(AI), 인재육성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관 업무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 이에 따라 세관신고 완전 전자화, AI 기반 리스크 분석 강화 등 29개의 세부 시책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무역 환경을 조성

II. 국경관리 고도화 및 강화

① 입국 여행객 세관신고의 완전 전자화 및 첨단기술의 적극 활용

- **(세관신고 전자화)** 휴대품 신고를 종이 서류 방식에서 완전 전자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 세관 직원이 직접 응대하는 체계에서 전자신고 게이트 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 없는 여행객은 워크스루 방식으로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크루즈선 대응)** 크루즈선 승객 예약정보의 전자적 보고 의무화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등 관련 검토를 추진. 크루즈선 승객에 대한 세관 검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장비 및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항만 관리자 등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
- **(여행자 검사 강화)** 단속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여행자 정보를 활용한 위험분석 고도화를 통해 검사를 강화. X-ray·CT 스캔 검사장비, 워크스루형 보안게이트, 바디스캐너, AI 로봇,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카메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여행객에 대한 세관검사의 신속화 및 고도화를 실현

② 항공 소형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 **(자동화 및 인력배치)**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X-ray 검사 공정의 자동화와 위험분석 강화를 통해 수입 항공화물 전체에 대한 검사 강화를 추진. 통관 심사의 24시간 대응 체계, 화물 검사 인력을 주간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 및 항공화물의 보세운송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방안 등을 검토
- **(민관협력 강화)** AEO 보세구역 운영인 및 통관업자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해 자율적인 화물 검사 및 사전정보 제출 협력을 장려하고, 자율검사 등에 대한 혜택으로서 법규준수 수준을 반영한 우선 통관심사 및 검사, 자사 시설을 포함한 공항 외 보세창고로의 보세운송 허용 등 혜택을 부여

- **(항공화물 검사센터)** 공항 신설·확장·개보수 계획 단계부터 항공 소형화물 전수검사를 전제로 「항공 화물 검사센터(가칭)」 구축에 대해 공항 운영회사 등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 주요 공항에 통관, 검사 및 보세 기능을 통합한 검사센터를 건설하여 항공 소형화물에 대한 집중심사 및 전수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

③ 항만화물 동선에 맞춘 대형 X-ray 검사장비의 선진적 활용

- 항만관리자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항만계획 및 개발 추진 시 컨테이너 터미널 내 화물 동선 상에 대형 X-ray 검사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조정을 추진. 터미널 등의 화물 이동 경로에 맞추어 대형 X-ray 검사 장비를 설치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해상 컨테이너 화물 검사를 고도화

④ 수출 단계에서의 단속 강화

- **(경제안보 대응)** 경제안보 위험이 있는 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수집·분석 역량을 더욱 고도화. 수출 사후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을 확대 추진
- **(협력 강화)** 수출관리 및 경제안보 대응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세관 및 국세청 간 소비세 부정 환급 및 금 밀수 관련 정보 교환을 강화.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하는 불법 수출화물 심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전자 제출 및 데이터 축적을 추진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불법 수출 방지를 위한 수출화물 검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

⑤ 출국 여행객 단속 강화

- 지폐탐지견 활용 및 필요한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세관 단속 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과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 또한, 정보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PNR의 수집 범위 확대 및 활용 강화를 추진

Ⅲ.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① 국경간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과의 협력 강화

- **(통관업자 및 우편사업자)** 통관업자의 사전정보 제출 및 NACCS를 통한 전자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보 제공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확대. 일본 우편과 협력을 통해 국제우편물의 EAD(사전 전자정보) 확보율 및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AI-OCR 기술을 활용하여 세관 신고서를 구조화 데이터로 변환
- **(플랫폼 사업자)** EC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자 관리, 위조품 및 불법상품 판매 규제 등을 적극 요청 하고,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판매정보, 배송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 향후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 진행 예정

②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확대

- **(보세업자)** 해외직구 화물을 취급하는 보세창고에 새로운 허가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든 입출고 화물을 NACCS에 기록하도록 지원하며, 필요시 세관이 보세구역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밀수대응)** 경찰청, 후생노동성 마약단속부, 해상보안청, 출입국재류관리청, 동물검역소, 식물방역소, 국세청, 외국 세관 등과 적극적으로 정보공유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및 규제물품 단속 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 또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자금세탁, 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

③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확대

- EPA 관세 인정 어드바이저가 수행하는 기업 상담을 지원하고, 보세구역 내 아트페어 및 문화·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세구역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 또한, ASEAN 회원국 및 태평양 도서국을 중심으로 세관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추진하고, 국제표준 제정 및 관세 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

IV. AI 등 첨단기술의 전략적 활용과 업무 고도화

① 세관업무에 대한 AI 전략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 **(디지털 기반)** 관세국 내 「디지털 기반 통괄실(가칭)」을 설치하여 2030년대 초까지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 통관서류 심사, 위험분석, 검사대상 선정 등 세관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고, 이를 위해 세관 절차 전자화, 문서 데이터화, X-ray 이미지 데이터 축적을 추진
- **(사이버보안 강화)** NACCS를 포함한 세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신 사이버 공격 동향 분석, 생체인증 도입, 백업 기능 강화 및 복구 체계 개선 등을 추진
- **(AI 영상분석 강화)** X-ray 이미지 AI 분석 모델을 도입하고, 국제 표준을 고려하여 X-ray 이미지 형식을 통일하는 한편, 축적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
- **(세관 전용 생성형 AI)** 「세관 생성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관 전문지식 및 업무 프로세스 학습, 지식 공유, 업무 자동화, 고급 분석 등 세관 업무 전반에 활용

② 세관 절차 DX를 통한 무역원활화

- 세관 상담 자동 음성안내 시스템 도입, 관세 및 세금 납부 시 캐시리스 결제 확대, NACCS 전자신청 의무화, 장부 및 서류 전자보관 확대를 추진. 또한, 세관 업무 관련 통계 및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세관 직원이 태블릿 및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CIS의 웹 기반 전환을 추진

③ 위험분석 고도화

-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보한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밀수 및 의심 수입을 탐지하는 AI 모델을 구축하여 경제안보 및 무역기반 자금세탁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검증된 AI 모델을 실제 세관 시스템에 적용

④ 첨단 단속·검사 장비 확대

- 감시업무 효율화를 위해 항공 드론 및 수중 드론을 활용하고, 워크스루형 보안게이트 및 고성능 검사 장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 또한 우주선에서 발생하는 뮤온(Muon) 입자를 활용하여 마약 및 폭발물 탐지를 위한 컨테이너 검사 기술을 연구하고 AI 기반 감시카메라 고도화를 추진

V. 인재 육성과 지속 가능한 차세대 조직 구축

① 매력적으로 지속 가능한 차세대형 직장 조성

- 모든 직원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춘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 또한,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 및 확보를 위해 전문 기술을 습득한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전국 어디서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② 인재 육성 고도화 및 인사 활용

- AI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업무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또한 IT, 데이터사이언스, 화학 분석 등 첨단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한 채용 확대를 추진

③ 근무거점 재편 및 9개 세관 협력을 통한 업무집중·평준화

-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관 조직의 통폐합, 비상주화를 추진하고, 통관심사 업무량 평준화를 위해 세관 간 통관심사 지원 시범사업, 전국 단위의 통관심사 일원화 및 세관 간 협력을 통한 업무량 균형화 등을 추진하여 업무 최적화를 실현

④ 업무 고도화·합리화에 기반한 적정 인력배치

- AI 활용 및 DX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인력 배치를 재검토. 특히, 급증하는 전자 상거래 수입신고와 방일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효율화하고, 확보된 인력을 검사·정보분석 부문에 집중 배치하여 단속 역량을 강화

VI. 향후계획

- **(추진방식)** 정책 시행 시에는 미래상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업무를 재설계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또한, 공항, 항만, 세관 검사장 등 관련 시설의 개보수 시기와 연계에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 **(향후과제)** 제도와 시스템 모두에 큰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의 경우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문제점 및 효과 등을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를 위해 주요 시범사업을 담당할 세관을 조속히 선정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04. EU(유럽연합)

출처 : 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국(아세안 ▶ EU ▶ 미국 順)



유럽연합의 새로운 철강 조치 동향

- EU는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하여 7.1.부터 기존 제도(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규조치(TRQ)* 시행 예정

*EU가 현재 운영 중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26.6.30.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 (현행 세이프가드 체제 하에서 한국의 무관세 쿼터는 258만톤)

- **(관세할당)** 철강 무관세 쿼터 총량을 46%(3,382만톤 → 1,835만톤) 축소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상향(25%→50%)

- **(쿼터협상)** EU는 한국, 일본, 중국, 튀르키예, 대만 등과 쿼터 협상* 중, 총 감축쿼터(1,835만톤)와 시행일자(7.1.)가 법제화되어 있어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 **(조강국 증빙)** 수입자는 수입 시 조강국(melt and pour country)을 증빙하는 자료(예 : 제철소 시험성적서(MTC, Mill Test Certificate)) 제출 의무

- 집행위원회는 '26.8.31.까지 증빙 자료 유형 등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채택할 예정*이며, 수입자의 제출 의무는 '26.10.1.부터 적용

*시행령 채택에 앞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치고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고려할 계획

< 조강국(Melt and pour country) 증빙 도입 배경 >

조강국은 철·철강이 제강/제철로에서 최초로 액체 상태로 생산 주조된 국가를 의미하며, EU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최종 생산 단계를 제3국에서 진행하는 원산지 우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원산지 우회 예시)** 중국산 특정 품목에 관세가 부과된 경우, 중국 기업이 직접 EU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반제품을 보내 추가 가공하면, 최종 원산지가 '베트남산'으로 변경돼 중국산에 적용되는 관세를 피할 수 있음